

정치범)을 보복하기 위한 특별독거감방이 14동, 16동으로 있습니다.

이 감방은 가로 1.2m, 세로 3m, 높이 2.2m인 용적을 가지고 있으며 방 한 편에는 두께가 20cm정도의 목재로 육중하고 시찰구는 2중 아크릴로 폐쇄되어 있고 창살문 역시 2중 아크릴로 완전 밀폐되어 있습니다. 벽은 스판지 벽지로 합판에 도배되었고 천정에는 비스듬한 유리창 너머 스티커, 형광등, 감시모니터 그리고 환기용팬이 자질구레 들어 있고 벽에는 교도관의 말소리를 전하고 감방내의 소리를 전해받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방은 하루 아침 저녁 두 번씩 환풍기를 돌려서 새 공기를 넣어 주고 그 외에는 방안에 들어 있는 $1.2 \times 3 \times 2.2 = 8\text{m}^3$ 의 공기로만 살게 되어있고 변소가 그냥 방안에 노출되어 있어서 습기는 항상 포화상태입니다.

또 합방거실은 1.6평의 면적에다 환기 및 시찰용 창구는 어깨높이에 가로 90cm세로 60cm정도의 것 뿐이고 따로 변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변소는 수세식 동양식 변기로 되어있는데 세수용 세면대가 없습니다.

물은 감방 밖에서 길어다 써야 하는데 수세식변소에서 물이 나오니 그것을 쓰라고 하여 대소변 세척용 물을 떠서 씁니다. 감방에서 식사후 그릇을 부시는데 변기를 깨끗이 씻고 변기 하수구를 솜뭉치 마개를 만들어 막고 변기에 고인 물에다 그릇을 씻습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하다지만 변기는 변기일 뿐 이것은 인간을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후 불박이 스티커에서 염청난 볼륨으로 음악인지, 연설인지 매일 똑같은 내용의 방송으로 짖어대니 신경이 갈갈이 짖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운동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 겨울에는 건물이 높은지라

땅에 별이 놓지 않고 겨우내 햅볕 한 번 볼 수 없읍니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재소자의 구금감시시설은 초현대적이지만, 재소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한 것 속박하는 전근대적인 시설이라 하겠읍니다.

(2) 교도관의 자질

1986년 쯤이면 다른 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소위 '수발'이라는 내용도 많이 변했는데 이곳은 80년대 초 아니 70년대 이전과 여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봉건시대 獄吏 그대로라 하겠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번을 사방 청소원이 담당 교도관에게 수발하는데 음료수 위에 얹힌 영양제 알약, 비타민류, 우루사간장약 등을 마시고 삼키고 합니다. 재소자가 면담하려고 불러도 겨우 인터폰으로만 대답하고, 걸핏 하면 '이 새끼, 개 새끼'로 폭언을 일삼고 시설도 현대화되기도 했지만 비인간성마저 현대화되었다고 할까.

영치, 서무 등 사무담당 교도관 등은 그 행동이 느리기 한이 없읍니다. 영치된 책을 찾는데 신청해도 1주일은 고사하고 열흘이 되어도 무소식, 편지는 도착후 보통 1주일. 재소자 운동회 때의 계호 또한 가관. 담위에 지붕위에 곳곳에 열중쉬어 자세로 완전무장으로 버티고 서서 하루종일 위압 속에서 지냅니다.

1986년에 학생운동으로 학생들이 대량 구금되었고 석방하라는 소리가 온 사회에 진동하게 되자 이를 석방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이들 학생들을 대전교도소에 차례차례 끌어 들여 반공교육을 강의하고 반성문을 받기로

했읍니다. 학생들은 이 교육을 반대하고 반성문쓰기를 거부하자 대전교도소당국은 학생들을 지하감옥에 가두고 뒷수정을 지우고 결박하여 엎어져 개밥을 먹도록 하는 등 갖은 폭행을 다하였읍니다.

이러한 공작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임모 교위가 갖은 고문, 폭행을 직접 감행했읍니다.

그래도 재소자의 사고는 제일 많습니다. 과연 비인간적 탄압이 심할 수록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심하다는 철리가 통합니다.

(3) 제반처우

급식은 각교도소 중에서 제일 불량합니다. 공공연한 고기범칙, 교도관도 그것을 보고 예사로 여깁니다. 운동시간도 30분, 나오고 들고 하는 시간을 빼면 20분 정도. 정치범들의 항의로 정치범에 대해서만 1시간으로 연장되었읍니다.

목욕시간에는 더욱 가관입니다. 물을 펄펄 끓게 해 놓고 교도관이 200명 정도의 재소자를 돼지 물 듯 몰고가서 방망이를 들고 빨리 하라고 시작하자 마자 설칩니다. 넓은 목욕탕에는 뜨거운 물로 해서 김이 자욱한 데, 뜨거운 물을 떠서 어쩔 줄 몰라 몸에 찍어바르다가 "그만" 소리가 나자 교도관의 방망이 춤이 벌어집니다. 이 열탕에 누가 빠져도 알 수 없읍니다.

실제 85년에 한 사람이 이 열탕에 넘어져 빠졌는데 아무도 뜨거워서 건질 수 없어 삶겨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탕 둘레에 철사를 둘러쳐서 넘어져도 탕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4) 보건시설

재소자가 아프다고해서 몇번 의무과에 약을 타러가면 소위 가병사에 입사시킵니다. 작업장에서 작업이 불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가병사에 입사시킵니다. 그래서 가병사는 환자보다 이러한 문제수가 더 많고 패병환자도 많습니다.

일단 가병사에 입사되면 의무과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구실은 의무과 소속교사가 와서 아픈사람에게는 약을 준다는 데 있읍니다. 그 교사의 진찰은 상당수가 '괜찮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실제 환자는 자변약품을 구입합니다. 이 구입은 잘 받아줍니다.

의무과의 시설은 각교도소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무색한 것으로 하고 있읍니다.

(5) 특별사동

정치범을 수용하는 사동으로 6사, 15사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동과 엄격하게 격리되어 있고 운동도 부채살운동장에서 독거운동을 합니다. 독거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형법상에는 독거는 1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20년, 30년을 독거수용당하는 소위 '미전향 좌익수'들이 있읍니다.

이상 대전교도소는 구금시설은 초현대적이지만 인간성 말살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교도관 역시 자질이 가장 유치하고, 폭언, 폭행, 태만, 비리로

재소자 위에 군림하여 재소자의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과연 독재체제의 전형이라 할 수 있고 전주, 광주, 대구 등 교도소와 다른 특수한 교도소라 할 수 있습니다.

VII. 몇 가지 제언

이상과 같이 10년 가까이 재소자 생활 그것도 정치범으로 지난 경험을 토대로 교도소의 실태를 제가 당하고 본대로 써 보았읍니다.

이에 대해 우리사회이 행형제도가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성이 보호받고 민주사회의 교도소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하여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1) 행형법과 그 시행령의 개선

현 행형법과 그 시행령은 교도소가 구금을 위주로 한 행형제도보다 재소자의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 본성까지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도소장의 재소자에 대한 권리보다 의무가 강화되도록 행형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2) 교도소를 구금당사자인 검찰의 지도하에 두지 않고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전변시켜 재소자를 명실공히 교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3) 인간의 양심을 말살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전향공작원으로서의 교회사제도를 없애고, 교화하는 교회사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교회사를 많이 양성하여 재소자가 심복할 수 있는 교화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재소자의 보건,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시설과 유능한 의료원이 있는 교도소의료원을 설치하고 각 교도소에는 이 의료원 산하의 보건소를 두어서 재소자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제언으로 민주사회에 걸맞는 교도소가 되고 재소자의 인권이 보장되며 그들의 심성이 교화되어 민주社会의 일원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20	BII	11

IBA 국제세미나 보고서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

1. 세미나 개최배경

이번세미나는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법조협회)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연대하여 일본의 대용감옥문제를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이의 폐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열린 것이다. 일변연은 일본에 있어 인권침해의 제도적 장치로 비판받고 있는 대용감옥을 폐지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동안 여러가지 일을 벌여왔다. 그런 일중 최근에는 대용감옥폐지의 근거를 국제인권법에 두고 폐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일으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권단체(국제적NGO)가 일본의 대용감옥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벌써 이러한 사업은 80년대 후반부터 앤네스티인터내셔널등에 의해 시도 되었던 바 있다. IBA도 이러한 일변연의 입장을 지지하고 수년전 부터 일본의 대용감옥폐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벌여 왔다. IBA는 작년에 호주의 저명한 변호사 Mr. Nicholas Cowdery QC(현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중의 검찰총장)로 하여금 일본의 대용감옥실태를 현지조사케 하고 9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보고서 발표이후 일변연은 일본의 대용감옥문제를 더욱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IBA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열기로 하였던 것이다. 국제인권법에 의해 대용감옥을 비판하고 이와 유사한 외국의 제도가 있다면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이를 폐지하자는 일변연의 제의에 IBA과 참가각국의 법률가가 동의하여 이번 세미나는 열리게 되었다.

2. 일본의 대용감옥과 IBA보고서의 내용

가.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도 경찰구속단계에서는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우리도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검찰송치이

후에도 피의자를 경찰서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검찰수사 시에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구속피의자의 약3%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국 1267개소의 유치장이 대용감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용감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특히 경찰)이 대용감옥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수사와 구금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구금처우의 강약을 조절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자백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대용감옥에서의 자백강요수사로 罷罪가 발생하여 80년대 재심으로 4건이나 무죄가 된 사례가 있다.

나. 일본정부는 수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도를 결코 폐지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무성은 현재의 감옥법(동법은 대용감옥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음)이 명치시대에 만들어진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80년대초 이를 대체하는 두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있다. 그것이 바로 형사시설법과 유치시설법이다(일본에서는 이를 구금二법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동법안은 국제인권수준에 걸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의 대용감옥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변연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다. 그결과 십여년간 3회에 걸쳐 상정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일변연은 92년 정부의 구금二법안에 대응하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이를 입법화시키기 위해 맹렬히 노력중이다.

다. IBA는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의 대용감옥은 수사와 구금업무를 분리해야한다는 국제인권수준에 비추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뿐만아니고 일본의 수사현실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동보고서의 최종결론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옥법을 개정하여 대용감옥을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2) 그러나 대용감옥이 현재의 형태로 남는다면

- 1)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분리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대용감옥의 관리를 법무성교정국에 이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 2) 대용감옥을 감독하는 독립의 기관을 설치하여, 피수용자가 이 기관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3) UN의 피구금자보호원칙(1988년 UN총회결의)은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3) 대용감옥의 존폐에 관계없이

- 1) 기소전보석제도를 인정해야 한다.
- 2) 묵비권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피의자가 일단 묵비권을 원용한 때는 그 후에 묵비권이 포기된 것이 독립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그 후 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 3) 변호인의뢰권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기소전에도 국선변호인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피의자에게 당변변호사제도를 고지하고, 요구가 있다면 변호사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수사관의 의무로 해야 한다. 이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문의 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 4) 자백의 임의성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 5) 적어도 자백에 관한 한 형소법 322조(피고인의 공술서, 공술녹취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6) 피구금자의 취급은 언제라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 7) 피의자의 신문은 사실대로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

- 8) 기소를 위한 협의의 기준은 완화되어야 하고, 검찰관이 성실하게 수사를 한 이상 면책되어야 한다.
- 9) 재판관은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관념의 실제적 적용에 대하여 좀더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한다.

(4) 일본은 고문금지조약을 비준해야한다.

3. 세미나의 내용

가. 세미나의 형식과 진행방법

세미나는 2월14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동경 시부야의 국제연합대학국제 세미나장에서 열렸다. 오전에는 각국의 패널리스트 7인이 각자 20분씩 발표하고(영어와 일본어의 동시통역)오후에는 플로아의 참가자와 패널리스트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나로서는 오전 3시간 동안 7명의 패널리스트들이 주제발표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최측의 노련한 운영으로 거의 차질없이 발표를 끝낼 수 있었다(이를 위해 주최측은 세미나 전 한달 전부터 20분의 시간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여러번 해왔고, 전날 사전협의 과정에서도 시간준수를 특별히 부탁하였다). 오후의 토론은 사전에 배포한 질문용지에 질문사항을 기재케하여 이를 분야별로 분류(4개부문)하여 사회자가 질문을 소개하고 패널리스트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플로아로부터 직접 질문을 듣고 패널리스트로부터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이날 방청석을 메운 청중은 변호사보다 대학에서 나온 형사법학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각국의 대사관 법무담당관 50여명도 시종일관 관심있게 경청하였다(한국대사관에서는 김승구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였다).

나. 참가패널리스트와 발표요지

(1) Prof. J Ross Harper

IBA회장. 그는 스코틀랜드의 수사와 공판절차를 소개하였다. 체포제도와 체포시에 준수해야하는 고지제도, 구금제도와 운용의 실태, 경찰의 신문방법, 묵비권, 자백의 문제, 보석, 법률구조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별첨 발표문 참고)

(2) Mr. Nicholas Cowery

현재 호주의 사우스웨일스주의 검찰총장. 그는 IBA의 조사관으로 대용감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일본측으로부터 특별히 일본의 대용감옥에 대한 국제인권법적인 강평이 요청되었고, 아울러 사우스웨일스주의 수사와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가 되었다. (별첨 발표문 참고)

(3) Mr. Dato Param Cumaraswamy

그는 말레이지아의 최대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현재 UN인권위원회로부터 사법의 독립과 공정에 관한 특별보고자로서 임명되어 있다. 또한 ICJ의 운영위원회이기도 하여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이력에 비추어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말레이지아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와 제도를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과신하였는지 2월13일의 사전협의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세미나가 시작된지 20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만용을 부리고 말았다. 더욱 그는 발표문도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유창한 영어로 장내를 휘어잡으려는 불성실을 보여주었다. 영어동시통역이었고 사전에 통역사들이 발표문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30%정도 의사전달이 되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 Mr. Jose Aguila Grapilon

현재 필리핀 변호사회의 사무총장. 남루손주 지사도 역임한 유명한 법률가. 그는 필리핀의 형사절차의 역사와 기원, 체포구금제도일반, 피의자및피고인의 권리, 보석제도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다만 그의 발표문

이 늦게 제출되었던 관계로 일문 번역이 없어 청중의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 같았다. (별첨 발표문 참고)

(5) 변호사 박찬운

나는 이번 발표자중 일본의 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외국법률가였기 때문에 일본측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었다.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제도를 설명하고 한국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대용감옥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별한 부탁을 받았다. 나는 수년전부터 감옥제도를 연구하면서 일본의 감옥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왔고, 특히 일본의 대용감옥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본의 법률가들과 3-4회 토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발표문을 3가지 내용으로 만들었다. ↗ 첫째는 우리의 제도를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둘째는 우리의 제도가 국제인권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검토한다, 세째는 인권신장을 위한 변호사들의 노력을 소개한다라는 것이었다(별첨 발표문참고). 나는 발표문을 영어와 일어로 직접 만들어 갔다. 그이유는 나의 의사전달이 통역이나 번역을 통하여 왜곡되지 않게하기 위함이었다.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의사전달은 70-80%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은 조금만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도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십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완벽한 번역은 오로지 발표자의 책임적 감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나는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의사전달이 정확했던 외국법률가가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특이한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도 처음으로 우리의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비판하였다는 것과 일본의 대용감옥유사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검찰송치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우리의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다는 사실과 그 실태를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6) 後藤昭氏

千葉대학의 형사소송법교수. 그는 특히 형사변호 공설변호인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세미나에서 IBA보고서를 일본의 법률가입장에서 분석하고 각페널리스트의 발표에 대해서 종합적인 인상을 이야기 하였다(발표문 참조).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국제인권법은 나라를 불문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수용은 서구제국과 완전히 동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법률제도는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차이에 의하여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존엄의 사상을 얼마나 자신의 제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는 IBA보고서중 일본의 기소는 유죄의 확신이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을 경우만 하므로 (한마디로 기소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이것이 자백강요의 수사를 강요한다는 부분에 대한 논평이었다. 서구의 기준은 일응의 증거만 있으면 기소를 하고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므로 자백강요의 가능성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기소율을 높이는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7) 西嶋勝彦氏

현재 일변연 구금二법안대책본부사무국장. 일변연이 대용감옥의 폐해의 결과로 나온 犯罪사건의 변호인으로 그동안 많은 공헌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일본의 형사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대용감옥의 실태와 자백강요의 수사 및 소극적인 재판소의 판결태도를 소개하였다. 덧붙여 일변연의 구금二법안투쟁의 역사를 소개하였다(발표문 참조).

다. 세미나를 통하여 본 한국의 문제점

나의 발표문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지만 금번 세미나는 나의 이러한 견해를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수사 그중에서도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비판하여 그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고적 차원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1) 법관에 의한 신문제도의 결여

구속절차에 있어 국제인권의 기본적 수준은 법관이 구속절차에서 직접 신문하는 것이다. 이번 참가국가중 이제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이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필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체포제도를 구속을 전치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의 법무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체포장은 임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임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제인권수준에 못미친다는 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2) 구금과 수사의 미분리

우리는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용감옥의 문제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다. 무엇보다 10일 간 경찰서유치장에 피의자를 구속한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제도도 국제적으로는 예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대용감옥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17개소의 대용감옥은 시설의 상태나 운용실태를 고려하면 일본의 대용감옥보다 훨씬 비인권적 실태임이 들어났다. 뿐만인가 안기부의 20일간 밀실수사는 국제적으로는 발표하기조차 창피한 인권침해의 극한 상황이다. 구금과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수준인데 안기부의 밀실수사를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

다는 말인가.

(3) 수사방법의 문제

고문과 자백강요의 수사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가 증거능력의 제한으로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관의 수사행태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우리도 왕왕 법원에서 문제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욱 두번째 방법은 논의 조차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의 세미나에서 IBA회장이 스코틀랜드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소개하였지만 영국에서는 경찰의 조사실무규범(The Police Questioning Code)에 의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적어도 24시간중 8시간의 연속된 휴식, 식사시간에의 조사중단, 2시간 간격으로의 다과제공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심야철야조사를 생각할 때 이러한 영국의 사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러한 규정을 만들고 만일 이규정을 위반하면 해당수사관을 처벌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4) 변호권수준의 문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변호권의 확대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제도의 채택, 변호인의 정보공개권의 확대(예컨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 등사신청권), 수사시의 변호인입회권의 확보 등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호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소개되었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어떠한가. 피의자단계에서의 국선변호는 고사하고 아직 피고인단계에서의 국선변호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우선 우리는 아직 변호인없이 진행되는 사건이 전체사건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변호인이 있는 사건중에서도 국선이

차지하는 사건은 20-30%를 넘지 못한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피고 사건에 변호인이 붙어있고 그중에서 국선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0% 가 된다고 한다. 지금 일본은 피의자단계에서의 국선변호를 목표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변호인의 수사정보공개요구권과 변호인입회권은 변호사단체가 형소법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요원하지 않은가.

4. 세미나준비와 관련하여 느낀 소감

우리도 국제세미나를 언제든지 개최해야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번의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일본측의 세미나준비와 그방법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한마디로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운 것이었다. 우선 이들은 작년 11월 나에게 세미나 개최일정과 내용을 미리 알려오면서 한국에서 참가가 가능할 것인가를 물어왔다. 나는 변협에 일본측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곧 협회에 공식적인 세미나 참가요청과 발표자의 추천을 의뢰하였다. 협회는 본인을 추천하였고 그뒤 일본측과 나는 수없는 의사교환을 하였다. 발표문의 내용에 대한 요망서가 도착하였고, 번역과 통역방법 그리고 발표시간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되었다. 그과정에서 IBA보고서를 영국의 사무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아 보았고 패널리스트의 발표문이 도착되는 대로 즉시 나에게 보내주었다. 덕분에 나는 2월13일 일본에 가기 전에 세미나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2월13일 호텔에서 패널리스트와 일본측 관계자가 모여 사전협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는 당일의 시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간, 내용에 대한 일본측의 요망사항을 들었다. 일본측은 패널리스트와 동반자에 들에 대한 간단한 선물도 잊지 않는 세밀함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들은 오후의 토론시간이 혹시 내용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될 것을 염려하고 그 방지를 위한 묘안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오전시간에 질문서를 작성케하여 이를 4개부분(구금장소, 신문, 변호인의 권리, 기

타)으로 나누어 사회자가 정리하여 패널리스트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결과 오후의 토론은 질서정연하게 논의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측의 치밀한 준비에도 부족한 것은 언론대책이었다. 일변연의 홍보가 부족했는지 언론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의 취재를 거의 보지 못했다. 옥의 티라고나 할까.

5. 기타 방일의 성과

가.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의 이렇다할 형사소송법 전문가가 상당수 참여하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리셉션장에서 인사를 나눈 인물로는 전후 일본의 대표적 형사소송법학자이자 동경대 총장을 역임한 平野龍一 교수, 일본에 영국의 당번변호사제도를 처음으로 소개한 專修대학의 庭山英雄 교수, 현재 국제 인권법적 시각에서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一橋대학의 村井敏邦 교수등이 있다. 이중에서 니와야마교수는 내가 2년전에 서울회의 당직변호사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방문하여 그의 연구실을 직접 방문한 이래 교분을 갖고 있는데 터라 특별한 환대를 받았다. 무라이교수와는 30여분 간 한국의 국선제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나. 일변연회장 土屋功獻씨를 특별히 만나 현재 양국에 현안이 되고 있는 법조 인구증원문제, 법조양성개선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는 최근의 한국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대한변협과의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내가 일변연측의 자료협조를 부탁하자 土屋씨는 담당부회장인 荒木 변호사(이사람은 福岡변호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작년초 동회에서 당번변호사3주년 기념식에 나를 초청한바 있어 그때부터 친분을 맺고 있던 터이다)를 불러 특별한 지시를 하였다. 내가 일변연을 방문하면 일변연의 모든 자료를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제공해주라는 것이었다. 덕분에 나는 2월15일 일변연을 방문하여 그동안 일변연이 이문제를 연구하면서 축적해놓은 자료 전부를 볼 수 있었다. 적어도 약 3000여쪽의 방대한

자료였다. 나는 그중에서 한국에서 참고가 될만한 자료일부를 얻어 올 수 있었다.

다. 망외의 소득이 하나 더 있다. 나는 이번 세미나의 일본측 관계자 海洞변호사와 이야기 하는 동안 그가 수년전부터 감옥법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어 왔으며, 최근에는 수형자권리센터(Center for Prisoner's Right)를 설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과 한국의 감옥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교환을 약속하였다.

이야기 도중 나는 그에게 손두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물론이라는 것이다. 손두팔은 재일교포로서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었던 인물로 그가 오사카구치소에 있으면서 구치소의 갖은 권리제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낸 판결이 저 유명한 1958년 오사카지방재판소의 平峯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의 감옥 법관련 판결의 이정표로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판결이다. 나는 이 판결을 작년3월 『시민과 변호사』에 소개한바 있다. 그러나 나는 이당시 이 판결을 소개하면서도 판결문 전문을 보지 못하고 글을 쓰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동판결은 그양이 자그만치 2백자 원고자 4-5백장 분량의 방대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후 나는 일본에 갈때마다 틈만 있으면 이판결문 전문을 입수하기 위해 수소문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카이도변호사에게 이판결을 가지고 있는 냐고 물어보았다. 뜻밖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구세주를 만난듯 그에게 판결문을 한부 복사 해줄것을 부탁하여 마침내 판결문을 입수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 과연 방대한 것이었다. 아직 전문의 일부 밖에는 읽지 못하였지만 나는 이것을 나혼자의 소장 자료로 만들지 않고 반드시 손두팔의 옥중투쟁이 어떠했는지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속 손두팔론』을 올중으로 쓸 것을 약속한다.

国際人権水準と韓国の捜査手続き

—拘束捜査を中心に—

大韓弁護士協会 弁護士 朴 燦 運 (パク・チャンウン)

1 研究の範囲と目的

本研究は、次のような範囲と目的で論議を展開したいと思う。

① 研究の範囲

日本の代用監獄問題との比較検討のために、研究の対象を起訴前の段階の捜査手続き、その中でも拘束捜査手続きに限って論ずることにする。

② 研究の目的

第一に、日本の代用監獄と類似した韓国の現状況を説明し、日本との違いを分析する。

第二に、韓国の拘束捜査手続きが国際的人権水準から見た時どれほど問題があり、その改善のためにはどのような制度を導入すべきかを検討する。

第三に、捜査手続きにおける人権向上のために弁護士たちがどのような改善努力をしているかを紹介する。

2 拘束制度の概観

① 拘束の要件

被疑者を拘束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被疑者が罪を犯したことや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り、且つ次の要件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した場合である（刑事訴訟法第 201条）。

①住居不定②証拠隠滅のおそれのある場合③逃亡または逃亡のおそれのある場合。

② 拘束手続き

被疑者は原則的に、検事の請求によって裁判官が発した拘束令状により、拘束される（201条）。但し、緊急拘束及び現行犯の拘束の場合は令状なしの拘束が可能であるが、令状発付期限内（48- 72時間）に拘束令状の発付が得られない場合は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刑訴法 207条、 212条の 2）。

拘束令状の請求権者は検事に限られ、司法警察官は検事に申請して検事の請求により拘束令状の発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裁判官は検事の提出した捜査記録だけを見て拘束の必要性の有無を決定する（書面裁判）。

③ 拘束期間

① 原則

司法警察官が被疑者を拘束した場合、10日以内に被疑者を検察に送らない時は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刑訴法 202条）。検事は司法警察官から被疑者の送検を受けた場合、あるいは検事が直接拘束した場合、10日を越えない範囲で拘束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刑訴法 205条）。したがって、原則的に起訴前の捜査段階で被疑者は、警察で10日、検察で20日、合わせて最大30日間拘禁されうるわけである。

② 例外

国家保安法事件の場合は、司法警察官（国家安全企画部）に1回（10日間）、検事に2回（20日間）まで拘束期間の延長が可能である（国家保安法19条）。したがって、国家保安法事件の場合被疑者は、起訴前の捜査段階で司法警察官によって20日間、検察で30日間、合わせて最大50日間拘禁されうることになっている。

④ 拘束場所

韓国法上、捜査段階での拘禁場所に関する法律規定は非常に曖昧である。刑事訴訟法には拘禁場所に関する規定はなく、行刑法に若干の規定があるにすぎない。行刑法は未決収容者の拘禁場所として教導所（刑務所）、拘置所、警察署の留置場を規定している（行刑法 2条、68条）。

この規定を根拠に、司法警察官が被疑者を拘束する場合、検察送致（送検）まで（最大10日間）は警察の留置場に拘禁し、検察送致後は（最大20日間）拘置所や教導所に拘禁する（しかしこれには例外がある。あとで説明する代用監獄に収監される場合には、検察送致後も普通第一審の裁判が終わるまで警察の留置場に拘禁される）。

国家保安法事件の場合、国家安全企画部内には適法な拘禁施設がないので、拘束令状の拘禁場所記載欄には近隣の警察署の留置場を記載し実際には被疑者を国家安全企画部内に拘禁するという便法を用いている。

⑤ 起訴前の段階における釈放制度

① 韓国では現在、起訴前の段階にある拘束被疑者を保証金の納付を条件に釈放する制度、いわゆる「起訴前の保釈制度」はない。ただ拘束適否審査制度があってそれが保釈制度の代わりをしている。拘束適否審査というのは、捜査機関により拘束された被疑者について裁判所が拘束の適法如何および拘束継続の必要性を審査し、その拘束が適法でなく不适当である場合被疑者を釈放する制度である（刑訴法 214条の2）。この制度を利用するには、まず拘束された被疑者や弁護人または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などが裁判所に拘束適否審査申請をし、裁判所は3日以内に尋問期日を定め（普通は申請書提出後 24-48時間以内に期日が指定される）、裁判の形式で適・否を決定する。

この制度の活用はだんだん増えていく趨勢にあるが、現実はまだ広範に活用さ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状態である。裁判所は主に、自白事件、被害弁済事件（あるいは被害者とのあいだに示談の成立した事件）、軽微な事件の拘束被疑者のなかから釈放対象を選別して釈放命令を発している。

② 最近は起訴前の段階でも保釈制度が必要だという意見が高まっている。それで現在政府が提示している刑事訴訟法改正案では、現行の起訴以後の保釈制度を拡大して、拘束適否審査請求時に保証金納入を条件とする「被疑者保釈制度」を採択している。

3 国際的人権水準から見た問題点

a. 裁判官による被疑者尋問制度の欠如

① 國際的水準

国際人権規約の9条3項は、被逮捕者がすみやかに司法官憲等の面前に引致され釈放の可否に関して裁判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規定している。このような規定は被拘禁者保護原則（The UN Body of Principles of a December 1988）の原則11でも再び確認されている。西欧諸国ではこれらの原則にしたがって、通常逮捕後 24-48時間以内に被疑者を裁判官の面前に引致し釈放の可否について判定を受けるようにしている。そのような制度は日本でも同様である。

② 韓国の状況とその問題点

しかし韓国にはこのような制度がない。現在韓国の裁判官は被疑者を直接尋問することはできず、検事が裁判官に令状を請求する時に添えて提出する捜査記録によってのみ拘束の必要性の如何を判断する。その結果裁判官は特別な場合を除いては、検事の請求する事

件のほとんどに対して令状を発付するのが慣行になっている。

現在、令状発付率は請求件数の90%を越えるという実情である。一年に約15万名ほどが拘束されているが、この数は人口が3倍に近い日本と比較しても、日本の一箇間の被勾留者の総数を上回る数値である。人身拘束が多すぎることは、監獄の収容密度を高め被拘禁者に対する処遇を悪化させる原因となっている。現在全国39の行刑施設に約6万余名の被拘禁者（既決・未決囚を合わせて）が拘禁されており、世界的にも最も過密な収容実態を見せている。

③ 新しい動き

韓国でも、被疑者的人権保障のためには裁判官が令状発付の段階で被疑者を尋問するとのできる制度（これを韓国では令状実質審査制度と呼んでいる）を導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が、これまで絶えずなされてきたし、最近ではこの主張が大勢を占めている。このような主張にしたがって韓国政府は昨年刑事訴訟法の改正案を作ったのであり、同改正案は現在国会で論議中にある。この改正案によれば、裁判官は必要な場合、令状発付以前に被疑者を尋問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しかしこの案は現在、令状実質審査制度はすべての拘束事件において必ず実施されね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によって、強く批判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

b. 起訴までの長期間拘束の問題点

① 國際的水準

被疑者は有罪判決を受けるまでは無罪を推定されるために、原則的に不拘束の状態で捜査をすべきであり、拘束する場合でもできるだけ早く起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そればかりでなく、拘束された被疑者には、釈放の機会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起訴前の保釈制度や拘束適否審査などが広範に活用され、起訴以前に釈放されて自由な状態で裁判に臨むことができるよう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大部分の人権先進国の例でもある。

② 韓国の状況とその問題点

韓国の場合、起訴前の拘束期間は最大30日（国家保安法事件の場合は50日）で、日本の23日（特別な場合は28日）に比べてずっと長い。日本でも23日というのは被疑者的人権保

障のためには長すぎるという批判があるほどなのに、ましてや韓国の場合はどうであろうか。

特に韓国はまだ、捜査段階で被疑者が自らを防御する権利が法律的にも現実的にも十分保障されていない状況なので、捜査機関での拘禁が長くなればなるほど被疑者があとで法廷で争うことのできる機会は減ることになる。とりわけ国家保安法事件の場合、50日ほど外部と遮断された状態で取り調べを受ければどんな事件でもほとんどが、自らの意思と関係なく自白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なってしまふ。安企部の密室で20日間取り調べを受けるあいだ、弁護人の接見も容易でなく家族の面会はさらに難しい状況で、被疑者がどれだけ自らを防御できるだろうか。

c. 被疑者の拘禁場所の問題点

— 韓国における代用監獄問題

① 國際的水準

大部分の先進国では、被疑者を逮捕すれば短期間（だいたい 24-48時間）警察の留置場に留置したあと裁判官の面前に引致し、その後も拘束が必要な場合はふつう拘置所に拘禁する。つまり逮捕後の短い期間を除いては拘禁場所を捜査機関の関与できない所にすることによって、拘禁を利用した捜査を制度的に防止しているわけである。このような先進諸国の拘禁制度を反映して、国連の被拘禁者保護原則21の①項は「自白あるいは他人に不利な証言を強要するために、拘禁された者あるいは受刑者の状態を不当に利用することは禁じ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② 韓国の問題点

上記のような西欧諸国の現実と国際的な原則に照らして見ると、韓国の拘禁場所の問題点として次のような点があげられよう。

第一に、被疑者を警察の留置場に10日間も拘束できる制度自体、国際的に類例がない（日本を除いては）。被疑者の裁判官への引致制度がないといっても、被疑者を警察署に拘束したあと10日間も捜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必然的に拘禁が自白を強要する状況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この点は日本の代用監獄問題と全く同じである。しかしこれまで韓国では10日間被疑者を警察の留置場に拘束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現行の制度に対し、それが自白強要の主要な手段となり得るという批判はほとんどなかった。最近に

なって徐々にこの問題の深刻さが認識されはじめ、弁護士や学者の間では捜査機関と拘束場所を分離すべきだとの主張が出始めている。

第二に、被疑者を送検したあとも引き続き警察の留置場に拘禁しておく場合がある。韓国ではこの場合だけを特別に代用監獄（監房）と呼んでいる。韓国には全国的に拘置所および教導所が39ヶ所しかなく、検察庁と裁判所がこれらの施設と遠く離れている場合が少なくない。そういう場合、警察署の留置場を代用監獄として使用しながら検察の捜査と第一審の裁判を進めるのだが、このような代用監獄は現在全国に17ヶ所ある。これら17の代用監獄には1日平均約2000名が収容されており、この数は全未決収容者の7-8%に当たる。代用監獄に収容されると普通一審が終わるまで収監され、抗訴（控訴）した場合は拘置所や教導所に移監される。代用監獄での被拘禁者に対する処遇は非常に劣悪である。何よりも過密収容が問題であり（平均して適正人員の1.5倍が収容されている）、施設も古びていて生活条件が非常に悪い。医療や運動施設などはほとんどない状態で、被拘禁者の健康を害する場合も多い（警察署の留置場管理に関する根拠規範はもともと行刑法であるが、管理自体が法務部ではなく内務部所属の警察官によってなされるために、現実には警察庁訓令である「被疑者の留置および護送規則」が根拠規範となっている。同規則によれば夏は随時、冬は月2回以上入浴を実施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現実には入浴施設がないためにその実施はほとんど不可能である。また医療に関する規定もあるが、医療施設も医療人力もない状況で適切な医療は不可能である）。そればかりでなく、行刑施設のような専門の矯正職員がいないので、被拘禁者に対する処遇は単に捜査と裁判のために狭い空間にとじこめておくことしかない。

このように韓国での代用監獄は法務部管轄の拘置所や教導所より施設が遙かに劣悪で、日本の代用監獄に比べてその数は少ないが運営の基本はほとんど同じと言える。もし違があるとすれば、先に見た警察の留置場の問題と同様、韓国ではまだ代用監獄が捜査機関の自白強要の手段に使われているとして、人権侵害の一つの実態として社会的に問題になったことはほとんど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ただ代用監獄に収容されている被拘禁者の劣悪な処遇だけが、時々問題にされてきた。これは一つには、代用監獄があまりにも過密収容の状態にあるため、その中で捜査を目的とした個別の処遇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不可能であるから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第三に、国家保安法事件での安企部（あるいは警察の対共分室）による20日間の拘禁は国際的に類例を見ない人権侵害の典型である。国家保安法事件の捜査はだいたい安企部や

警察の対共分室で行われるが、例外なくこれらの機関には適法な拘禁場所がない。適法な拘禁場所でもない密室で、20日間も人身を拘束したまま強圧的な捜査（自白強要の捜査）が進められている。最近弁護人の接見が以前より容易になったとはいえ、拘置所や警察署に拘禁されているのよりはずっと条件が厳しく制約も多いことには変わりない。

国家保安法の事件では日本の代用監獄で起きている自白強要は無数に起こっており、その強度は日本とは比べものにならないほど深刻であると思われる。

d. 取り調べ方法の問題

① 国際的水準

自白を強要する取り調べを防ぐために、先進諸国では大きく分けて次の二つの方法をとっている。

第一は、自白がこれを強要したと疑うに足る状況（暴行や脅迫などがあった場合）でなされた場合（いわゆる任意性を欠いた自白）には証拠能力を否認する方法。アメリカのミランダルールや毒樹毒果理論がそれである。

第二は、捜査官の取り調べ方法を具体的に制限し、自白強要の状況を源泉的に防ぐ方法である。例えばイギリスの「警察の身柄拘束及び処遇と取り調べに関する実務規範（Code of Practice for the Detention, Treatment and Questioning of Prisoners, The Police-Questioning Code）」の12条は、取り調べの時間について「24時間のうち少なくとも夜間8時間の連続した休息」を、同条7項は「食事時間の取り調べ中断、2時間間隔での茶菓のための短時間中断」をそれぞれ定めている。

② 韓国の状況とその問題点

① 被告人に関する捜査機関作成の調書（供述書）の証拠能力の問題は、韓国と日本では法制度上かなり異なっている。韓国では、検事作成の供述書と司法警察官作成の供述書を厳格に区別して証拠能力を付与する。すなわち検事作成の供述書は、被告人が法廷でその内容を否認しても、その供述書が特に信用すべき情況下（いわゆる特信状態）で作成されたものと認定されれば証拠能力が認められるが、司法警察官作成の供述書は、特信状態は問わず、必ずその内容を被告人が承認して初めて証拠能力が認定される（刑訴法312条）。したがって、韓国の法廷で被告人に関する捜査機関作成の供述書の証拠能力が問題になるのは、現実的には検事作成の供述書に限られている。

② 韓国の裁判所は、被告人と弁護人が検事作成の被告人に関する供述書上の自白が「任意性を欠いた自白」であるとしきりに主張するのに対し、まだ寛大な立場をとっていえるとは言い難い。検察での被告人の自白が脅迫と暴行など拷問によりなされたものだと主張しても、多くの場合認められず、検事作成の被疑者供述調書は証拠として認定される傾向にある。ただ最近になって大法院（最高裁判所）で「検事作成の被疑者供述調書が検事によって被疑者に対する弁護人の接見が不当に制限されている間に作成された場合は、証拠能力がない」と判断（大法院1990年8月24日宣告）したものや、「捜査機関が被疑者の取り調べに当たって被疑者に陳述拒否権のあることを前もって告知しない場合は、その被疑者の陳述は違法に収集された証拠として、陳述の任意性が認められた場合でも証拠能力は否定されるべきである」と判断（大法院1992年6月23日宣告）したケースに見られるように、裁判所の視角が変わりつつあることも事実である。

③ 韓国では捜査官の取り調べ方法について特別に規定しているものはない。その為、捜査機関は被疑者に対し拷問さえしなければどんな取り調べをしてもよいといった認識が普遍化している。代表的な問題が徹夜の取り調べである。韓国で重要事件の取り調べは主に捜査機関で深夜に徹夜で行われるのが慣行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徹夜の取調べは、睡眠権を長時間妨害し外部との交通を徹底的に遮断した状態で行われるために、それ自体がすでに拷問に近いものである。しかしこれまで、徹夜の取り調べが裁判で問題になったことはあまりない。

こういう状況であるから、送検されたあと被疑者が拘置所に収容されるとしても、やはり日本の代用監獄の弊害と同じような問題が生じると考えられる。検察は午前中に拘置所にいる被疑者を召喚して翌日の明け方まで徹夜の取り調べをすることができ、このような検察の捜査に対して行刑当局は何らの権限も行使できない。こうした状況では、送検以後被疑者が捜査機関でない拘置所に収監されるからといって、日本の代用監獄のような問題が起こらないという保障はない。

したがって韓国では、被疑者の拘禁場所の問題も重要であるが、それよりも被疑者に対する取り調べ方法、その中でも取り調べの時間に関する制限が法的に規定されない限り、被疑者の身柄の管理が拘置所側にあるといつても、その意味は半減せざるをえない実情である。

e. 弁護制度の問題点

① 国際的水準

弁護人の助力を保障することは、捜査段階にある被疑者の人権保障のために最も現実的な方法である。このため各種の国際人権規範は例外なく刑事事件の被疑者に対する弁護制度を規定しており、特に国連被拘禁者保護原則18は、弁護人の接見権について詳細に規定している。その中で第3項は「拘禁された者または受刑者が、遅滞なくまた検閲されるとなく完全に秘密が保障された状態で弁護人の訪問を受け弁護人と相談または通信する権利は、停止されたり制限されたりしてはならない」と規定して、捜査機関による恣意的な接見制限を禁じている。さらに同原則17は、捜査段階での国選弁護を要求しているものとも解釈できる。

アメリカでは1960年代からミランダルールが確立され、捜査段階で私選弁護人がいない場合でも被疑者が弁護士の接見を要請すれば、捜査機関では公選弁護人をつけ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さらに進んで取り調べのときの弁護人の参与も保障している。

イギリスではすでに1980年代から弁護士の刑事被疑者に対する助力を保障する Duty Solicitor Scheme が確立されている。

② 韓国の問題点

韓国でも刑事被疑者が弁護人の助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憲法上の基本権であり（憲法第12条）、刑訴法は弁護人の接見権を絶対的な権利として保障し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規定にもかかわらず、現実と制度は国際的水準にはるかに及ばない状態にある。

第一に、制度的次元において韓国の弁護制度はまだ不十分である。

① 何よりもまず捜査段階では国選（公選）弁護制度がなく、お金のない人は弁護士の接見を期待できない。

② 韓国の弁護士は取り調べに立ち会う権利がない。韓国の法律家団体では、捜査段階での人権侵害を防ぐために、取り調べ時の弁護人立会い権を一貫して要求している。

③ 韓国の弁護士には捜査段階で捜査記録の閲覧および複写を申請する権利がない。その結果、捜査段階で被疑者がどのような嫌疑でどのような取り調べを受けているのか弁護士もはっきりわからないという事態が起こっている。

第二に、現実的な次元では、弁護人の接見が妨害されたり侵害されたりするケースが起きている。

① 捜査機関（警察・検察）に弁護人接見室が設置されている所はほとんどないといつてもいいくらい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では秘密接見が保障されるはずがない。

② 公安事件や重大事件では、現在でも往々にして捜査機関により接見が制限されたり妨害されたりすることがある。接見妨害は過去の軍事政権時代よりは顕著に減ったけれども、いまだに根絶されてはいない。

③ 弁護人接見制度をめぐる弁護士たちの努力

韓国では最近になって（7-8年前から）、捜査段階での弁護権確立のために多くの弁護士が活発に闘っている（その中でも代表的な弁護士グループが「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の会」、略称「民弁」である。この団体は1988年に設立され現在170余名の会員を有し、この6年間に1000名を越える良心囚の弁護をしてきた）。その方法は大きく分けて二つである。

一つは、弁護人接見侵害に対して不斷に裁判所と憲法裁判所に異議を申し立てる方式である。捜査機関が弁護人の接見を許可しない場合は裁判所に準抗告を提起し、場合によっては国家を相手に損害賠償を請求する（損害賠償請求の原告は以前は被疑者本人であったが、最近は弁護士自身が原告になる傾向が増えてきた）。

さらには憲法裁判所に憲法裁判の一つである憲法訴願を提起する場合もある。代表的な例として、弁護人接見時に捜査官が立ち会ったという事件でこれを違憲と確認したケース（1992年1月28日宣告）がある。

もう一つは、組織的次元から捜査段階での弁護制度の質を高める運動である。当直弁護士制度がすなわちそれである。これは日本の当番弁護士制度と同じもので、今後イギリスの Duty solicitor Scheme と同じような制度へと発展させるために努力中である。1993年5月にソウルで始まり、現在では全国12の地方弁護士会のうち7つの弁護士会で実施している。参加弁護士の数は全国的に700余名、これは全弁護士の25%に当たる。最も活発な地域であるソウルでは現在420名の弁護士がこの制度に参与しており、施行1年6ヶ月（1994年11月）で、受け付け処理した事件数は2000件に達した。

国際的人権水準に符合するよう現在の制度と現実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一に、拘束令状発付以前に裁判官が被疑者を尋問することのできる被疑者尋問制度（令状実質審査制度）が、全面的に導入されね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現在の拘束手続きを、逮捕手続きと拘留手続きとに二段階化する必要がある。

第二に、捜査段階で長期間拘禁する現在の拘束手続きは改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特に国家保安法事件での最大50日の拘束は、その人権侵害の程度が甚だしいものであるから一日も早く改正されねばならない。

第三に、拘禁場所は捜査機関と分離することを原則とすべきである。そのためには、10日間拘禁することのできる現在の警察署留置制度も再考が要請される。また韓国にも存在する代用監獄は、被拘禁者の人権を本質的に侵害するものであるから一日も早く廃止されねばならない。

第四に、捜査機関の取り調べ方法に対し具体的な制限を加えることのできる法制度の立法化が必要である。深夜徹夜の取り調べを可能にする現在の制度は、拘禁場所を捜査機関と分離したとしてもこれを有名無実にしてしまうものである。

第五に、捜査段階で捜査機関から妨害されることなくすみやかに弁護人の助力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法制度が、一日も早く作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当直弁護士制度はこのような制度に向けての、かけ橋的役割を担うべきである。

終わりに、日本の代用監獄制度について、発表者の見解を述べたい。

起訴前の捜査段階の全期間のあいだ、捜査機関に被疑者を拘禁して取り調べる制度は、先進文明国の中では類例を見ないものである。制度的に見ると韓国にも代用監獄問題が全くないわけではないが、日本ほど深刻ではない。経済大国日本と代用監獄制度をもっている日本というものは、世界の人の目から見るとき理解できない部分だ。

日本が一日も早く、捜査手続きにおいて国際的水準の人権保障システムを備え、名実共に経済大国にふさわしい人権先進国へと発展することを、世界人の一人として祈りたい。

행정법 개정 및 감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박찬운

(변호사, 대한변협 행형제도연구소위 간사)

1.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필요한가

마다 나는 이 말이 대단히 의미 짐작한 말이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과연 감옥에서도 인권은 필요한 것인가?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낼 것이다. “죄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야.”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한 감옥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권의 역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죄짓고, 벼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죄 안짓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경찰서도, 검찰청도 가보지 못하고 더더욱 감옥이라는 곳은 구경할 기회도 없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람들에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러한 곳에 자주 드나드는 범죄인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감옥에서의 인권 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이다'라는 말이 이따금씩 들려올 때

2. 행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법률화, 사회화, 국제화의 3원칙

나는 그동안 감옥문제을 연구하면서 외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여러곳의 감옥을 직접 방문해 본 바 있다. 그리고 재소자들과 수감경험 있는 사람들, 현직 교도관들, 그리고 법무부 교정국의 교정공무원들도 만나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우리 행형제도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개선방향도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은 법률화, 사회화, 국제화의 3원칙에 입각해 개선을 시도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차례로 살펴보자.

**재소자는 처우가
나빠졌다고 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법률화: 피구금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행형제도의 개선방법을 의미하는 문제이다. 우리 행형제도에서 재소자의 인권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법률(행형법)에 근거함이 없이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각종 공문으로 그때그 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행형제도가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의 한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재소자가 감옥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률상 권리로서 허용되기 때문이 아니고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다.

우리 행형법은 어디에도 “재소자는… 할 수 있다”거나 “소장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대개 “소장은…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소자는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자유를 잃게 된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교정당국의 시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행형법은 이러한 교정당국의 재량을 가능케 하는 근거규정일 뿐이다. 시혜는 조변석개하는 것이므로 어제까지만 해도 허용되었던 것이 오늘

부터는 당장 금지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교정당국은 얼마든지 처우를 달리할 수 있다. 재소자는 처우가 달라졌다고 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행형법보다는 하위법령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오히려 장관이나 교정국장의 지시나 공문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이렇다보니 어떤 교도관도 자신 있게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법무부는 1982년 그간의 교정관계 훈령, 예규, 지시 등을 모아 교정예규집을 펴냈는데 그 분량이 무려 1,118쪽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가 제도개선의 방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가급적 행형법에 법규정으로서 집어넣는 일이다. 이를 위해 “소장은… 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재소자는… 할 수 있다”는 형식의 행형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구금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급적이면 행형법에 규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임하는 경우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아래에서 행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언급한 국제화와 사회화의 내용이 행형법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시행령과 법무부령, 기타 예규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처우규정을 가급적이면 행형법으로 통합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위법령으로 위임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출발은 행형에 있어서의 피구금자의 지위를 단순한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법의

적정절차에 의해 지배되는 법률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사회화: 보안위주에서 사회복귀교육의 강화를 행형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행형제도의 개선내용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행형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개선의 초점은 주로 어디에 맞추어야 하며, 개선의 기본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는 행형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행형의 기본목표는 수형자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목적이다. 이는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에서의 목적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형자를 특정공간에 가두어 못나가게 하는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복귀 교육이다. 즉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형을 형벌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행형이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창조하는 교육에 다름 아니다.

전자의 입장은 강조하면 행형은 보안 위주로 나아가게 되고, 후자의 입장은 강조하면 피구금자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게 된다. 행형의 국제화수준과 행형선진국의 입장은 행형의 목적을 주로 두번째 입장에서 살핀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서는 어떠한 처우가 피구금자로 하여금 재사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행형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우리의 현재 행형은 교육형사상에 맞춰 피구금자를 재사회화시키겠다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제도 곳곳에 나타나 있는 응보형사상의 유물과 보안 위주의 현실은 그러한 목적을 무색케 한다. 따라서 행형제도를 개선할 때

**행형제도를 개선할 때
구금 위주에서 벗어나
피구금자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개선책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피구금자를 사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안, 즉 구금 위주에서 피구금자의 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개선책 곳곳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형의 사회화는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는 행형시설에 있어서 생활수준과 생활양식이 일반사회와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즉, 행형시설의 비사회성과 이상성을 배제하는 것이다(예컨대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독거실 규모의 거실에 2-3명의 재소자가 구금되어 있으며, 겨울철에는 거의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이는 재소자의 생활이 사회의 일반수준에 비춰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둘째는 피구금자의 주체성을 가능한 존중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도와 훈련을 시켜야 한다. 행형시설 내에서의 각종 취업훈련이 사회에 나가 활용할 수 없다면 수형자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곧바로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이를 위해 직업훈련이나 작업도 가급적 자신의 소질이나 희망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 출소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1일

**재소자에게는
면회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좋고,
서신의 경우도
그 횟수를 늘이고
내용검열을 완화해야 한다**

600-3000원의 현재의 작업상여금도 가급적 임금 형태로 지급되어 출소 후 사회적응의 정착금으로서 의미가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행형시설로 하여금 일반사회로부터 일정한 참여와 간섭을 받게 해야 한다. 폐쇄적이고 밀행적으로 운영되는 행형시설은 사회에서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로 결코 피구금자의 사회화에 도움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권침해를 강요하는 현실이 되기도 한다(그런 면에서 재소자에게는 면회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기회를 넓히는 것이 좋고, 서신의 횟수나 내용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횟수를 늘이고 검열도 완화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국제화: 국제결의를 준수하고 선진국의 인권원칙을 배워야 한다

이는 우리 행형제도가 나아가야 할 수준의 문제이다. 위에서 말한 법률화와 사회화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행형제도의 국제화이다. 국제화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행형제도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각종 인권조약이나 UN 결의 등의 인권원칙에 우리의 행형제도를 부합시키는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 행형제도상 국제원칙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1957년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이나 최근의 피구금자보호원칙(1988년 UN 총회 결의)에 비추어보아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우리가, 그것도 UN의 회원국이 되어 있는 우리가 UN 회원국들에게 그 준수를 결의한 각종의 인권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여러나라의 행형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수준에 우리의 현실을 근접시키려는 노력이다. 인권이란 보편적인 개념이다. 미국에서 보장되는 인권이 바람직하다면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그 도입이 제한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문화적 사대주의란 말로 매도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행형의 국제화는 필요조건으로서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한 국제인권원칙에 우리의 행형제도를 충족시키고, 충분조건으로서 서구의 행형선진국과 비견될 수 있는 우리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정방안

이제 위와 같은 행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금번 법무부의 행형법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야겠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5일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이번 정기

국회에서 행형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대로 미결수에 대한 처우개선(형확정자와 원칙적으로 같게 처우하던 것을 미결수에 알맞게 처우), 미결수에 대한 변호인접견 개선, 친족 아닌 자와의 접견 및 서신의 완화, 징벌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개정에 반대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일단 큰 반대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법무부가 개정절차에서 보여준 태도에 큰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법무부는 개정논의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나 어떤 법률가 단체와도 의견을 교환한 흔적이 없다. 그저 법무부 교정국, 그중에서도 몇몇 교정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해서 소리없이 연구하고, 소리없이 그 결과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애음을 틈타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러다보니 개정안은 미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화·사회화·법률화의 3 원칙에 어느 정도라도 부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

우리의 행형법이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후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행형법의 모든 규정이 피구금자를 행형시설의 관리와 감독의 대상으로 취급할 뿐 어떠한 권리주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는 항상 행형시설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그러므로 개정되는 행형법에는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차별금지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한다. 현행제도는 사상법의 경우 분류·누진처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우리의 행형법은
피구금자를 행형시설의
관리와 감독의 대상으로 취급할 뿐
어떠한 권리주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강자나 권력층에 대한 처우는 일반재소자에 비해 특별처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처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구금자는 성별, 국적, 종교, 사상, 기타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총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도 선언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행형현실은 교도관에 의한 폭행, 비인도적인 징벌 등이 남아 있으므로 “피구금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잔학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총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원칙’도 선언되어야 한다. 미결구금자와 수형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하기 위해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자로서의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고, 그의 방어권은 존중되도록 처우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총칙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미결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 개선방향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개정안은 수형자와의 공동 적용 규정과 미결수용자 적용 규정으로 나누어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 체계는 찬성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의 미결수용자의 처우가 변화되길 기대할 순 없다. 현재 시급히 미결수용자의

전국의 39개 시설에는 평균 1,500여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는 적정인원 500명에 비추어 3배에 가까운 과밀수용이다

처우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차폐시설 설치의 금지

현재 행형시설의 변호인 접견실 중 차폐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없지만 법무부는 1992년 영등포교도소를 비롯한 몇 개의 시설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대한변협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같은 시설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실은 차폐시설 없이 자유스럽게 접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설은 소리가 밖으로 쉽게 나가는 시설이어서는 안된다”는 차폐시설 금지규정이 필요하다.

▶ 녹음기 등 사용 허용

변호인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접견 중 녹음기, 사진기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접견시에 녹음기, 사진기,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화 및 전보의 이용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을 받는 자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외부교통의 한 방법으로 전화나 전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전화 및 전보로 통신 할 수 있다. 단 그 절차는 전화에 대해서는 면회

의 규정을, 전보에 대해서는 서신의 규정을 준용한다”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행형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

우리의 행형 실태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밀수용이다. 현재 전국의 39개 시설에는 평균 1,500여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상의 적정인원 500명에 비추어 무려 3배에 가까운 과밀수용이다. 과밀수용은 재소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5평 내외의 사방에 5-6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분류 누진처우를 형식화시키고 있다. 한편 여성과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는 일반교도소보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이외에는 전문 행형시설이 없다.

따라서 행형법에 과밀수용을 지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행형시설 설치기준 규정과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행형법 제 2장(수용)에 둘 필요가 있다.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행형시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거주조건

“피구금자의 거실의 구조, 최저면적, 조명, 온도, 환기, 일조 등은 피구금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소규모화 및 전문화

“수형자에 대해 분류·누진처우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 행형시설을 초중(超重)구금시설, 중(重)구금시설, 경(輕)구금시설 및 개방시설로 나누어 설치한다”

“피구금자 중 여성과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여성교도소와 의료교도소를 설치한다”

4) 의료시설 등 생활조건 개선사항

▶ 의료시설 및 의료인원 확보

현재 행형시설에는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피구금자가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진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거절되는 일이 많아 그 시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행형법 제6장(위생과 의료)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모든 행형시설에는 1명 이상의 상근 의사와 필요한 보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장은 피구금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 진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명백히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

▶ 운동시간의 연장 및 명문화

현재 피구금자에 대한 운동은 시행령상 매일 1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통상 목욕일과 우천시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형법에 보다 확실한 운동규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형법 제 24조(운동) 규정을 “소장은 피구금자에게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식사 및 음료 개선

현재 피구금자에 대한 1일 주 부식비는 1332원으로 식사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행형법에 식사의 질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행형법 제21조1항을 “피구금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 등을 참작하여 위생적으로 조리되고 필요한 영양가를 갖춘 식사 및 음료를 지급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의류 및 침구위생 개선

현재 재소자들의 관급 의류 및 침구는 충분하지

작업 지정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작업상여금이 너무 적어 출소후에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못하고, 그 위생상태는 낙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행형법 제 20조 1항을 “피구금자에게는 계절에 맞춰 위생적이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의류와 침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5) 재소자의 작업 관련 개선사항

현재 작업에서 심각히 문제되는 것은 작업지정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작업상여금이 너무 적어(최저 1일 600원 최고 3600원) 출소후에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작업중 재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행형법 제8장(작업)의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 작업지정(제 35조)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 장래의 생계 및 수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 작업상여금(제 39조 2항)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출소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만한 작업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 위로금, 조위금(제 40조 1항)

현재는 법무장관에 의한 청원권을 수령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직원으로부터의 방해가 많다

“수령자가 취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일반사회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가석방심사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

현재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의 수가 적은데다 당해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가석방 심사의 객관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형법 제 50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심상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7) 기타 기본권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도서 열독의 자유

현재의 도서열독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허가사항이다. 그러나 도서열독은 재소자의 사회화 및 교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형법 제 33조(도서열독) 규정을 “피구금자는 서적, 잡지, 신문, 기타 공간된 문서, 도화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방법 및 소지권수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행형시설에는 법률서적을 포함한 서적을 갖춘 도서실을 설치하여 피구금자의 독서열독의 편리를 제공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 집필 및 창작의 자유

현재 재소자들은 집필을 하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고 집필허가가 거절되어 재소자들의 사회화와 교화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행형법 제 7장(교육과 교회)에 다음과 같은 집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소장은 피구금자에게 필기구와 종이를 지급하여 집필 및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정신이상자, 3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난폭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청원권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현재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청원권을 수령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직원으로부터의 방해가 많다. 그런 이유로 재소자들이 처우 불만은 많지만 서면에 의한 청원권 행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형법 제 6조(청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피구금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사(보좌인) 통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9) 행형당국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행형당국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를 행형당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는 경우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의무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우선적

으로 교정공무원이 피구금자의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과의 면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4. 행형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크게 낙후되어 있는 현재의 행형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행형법령의 정비를 생각하면 현행 행형법과 관련 법규를 조금 손질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수령자와 미결수용자의 분리 처우,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의 법률화의 강화(법률에 의해서 피구금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우의 방법을 행정입법이나 교정행정에 의하지 않고 가급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 처우의 사회화와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형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은 현재의 행형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구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1982년 법무성이 감옥법을 대체하는 형사시설법과 유치장시설법을 국회에 상정(그후 3회 폐기)했다. 이중 형사시설법 체계만 보더라도 우리 행형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법안 내용이 대용감옥 제도를 유지하고, 국제인권수준에 미흡하다고 하여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 체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론이 없다). 그 법안은 제1편 총칙, 제2편 수령자의 처우, 제3편 피구류자(미결수용자)의 처우,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5편 잡칙(영치, 상벌, 불복제도, 석방, 사망, 벌칙 등 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를 행형당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는 경우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정)의 총 169조로 이루어진 법안이다. 종래의 감옥법이 우리의 행형법과 같은 체계의 총 7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히 완전한 구법(감옥법) 폐지와 신법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입법을 제정한다면 그 명칭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피구금자처우법’이 적당하리라고 생각한다. ‘행형법’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에서 형벌을 집행한다는 의미밖에는 없어 현재 요구되고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적정한 교정 교화의 의미가 연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구금자(수령자, 미결수용자의 총칭)에 대한 처우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피구금자 처우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체입법을 법무부의 독자적인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법무부와 법률가 단체 그리고 학계, 행형제도에 관심있는 단체와 개인이 연구한 업적을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진실로 행형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발본적 개선을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연구작업을 이제부터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선정한

1994년 한국언론의 10대 왜곡 편파 보도사례

이글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정동익)의 모니터위원회가 1994년 한해 동안 우리의 언론이 보여준 10대 왜곡 편파 보도사례를 선정해 한국언론의 그릇된 보도행태를 고발한 보도자료이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언론개혁의 주요한 근거자료로서 사례 하나 하나가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양해를 얻어 내용을 요약재제한다. (편집자 주)

1. 정치불신 키우는 정치관련 보도 — 12·12 대치 정국과 국회 공전 보도

한 국언론이 정치문제를 보는 시각은 매우 비판적이고 훈계적이다. 사회 각 부분이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춰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만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질책한다. 상당부분 타당한 지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언론이 이런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망과 비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데서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의 공전을 야기했던 12·12 대치정국 보도에서는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 12·12 대치 정국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들은 “국회 며칠째 공전”이라는 현상만을 부각시켜 12·12 기소문제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해 버렸다. 특히 민주당의 기소주장을 이기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민주당내의 계파간 갈등으로만 해석하여 12·12 기소문제가 갖는 본질을 왜곡시키고 12·12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버렸다. 특히 ‘세력다툼과’과 ‘정치술수’에 초점을 두고 여야간의 갈등과 대치 현상에만 집착, 흥미위주의 보도로 일관했다.

2. 검찰취재는 성역인가? — 반론없이 받아 쓰기에 급급한 검찰수사 보도

대부분이 언론들은 출입처를 통해 기사를 취재한다. 한때 존폐의 논란에 처했던 출입처 제도는 그 폐지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의 편의에 의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취재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출입처 제도가 이른바 힘 깨나 쓰는 기관인 경우에는 넘지 못할 취재금지의 성역으로 남는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초기에는 각 언론들이 나름대로 특별취재반을 구성, 광역취재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검찰의 수사 발표만을 보도하고 있다. 검찰 수사 발표 후에는 여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